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 11. 26 선고 2024가단2012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유한회사

피고B

변론 종결 2024. 11. 5.

판결 선고 2024. 11. 26.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3. 2. 22.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3. 4. 4. 접수 제51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11 지분에 관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상속재판 협의분할 계약(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 한다)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98년경 C에게 C이 망인 사망시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속분의 선급 성격의 부동산 구입대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으므로,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1, 2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속분의 사전 포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 줄을 몰랐다고 항변하나, 피고도 'C이 극심한 생활고로 시흥시에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고, 척추 등의 상해로 인하여 고향에 귀향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지성

별지